의 안 번 호

1072

【울산광역시중구 공동이용시설 관리 조례안】

검토보고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4. 6. 30.(월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4. 7. 2.(수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4. 7. 21.(월)

2. 제정이유

지역발전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시설의 위치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나. 시설의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마. 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8조)
- 바. 사용자 의무 및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10조)

4. 관련법령

- 가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
- 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

5. 검토의견

○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과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하는

것으로 주요내용은 운영, 사용, 사용료 납부, 사용자 의무, 사
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,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
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